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5081 면책확인청구
원고, 피항소인 ○○○
제천시
송달장소 청주시
피고(탈퇴) 주식회사 ○○○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1 대치빌딩
대표이사 ○○○, ○○
피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1 골든타워빌딩 3층
대표자 이사 ○○○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 9. 28. 선고 2011가단16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9.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5차13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2,424,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2,424,500원(원금)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2003. 6. 25.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2005. 1.경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5차 ○○○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546,824원 및 그 중 2,424,500원에 대한 2005.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05. 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4. 5. 27.부터 2007. 5. 28.까지 사이에 서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원고는 2007. 2. 12.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2007. 4. 25. 채무조정이 확정되었고, 그 채무조정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가 따로 구분되어 각각 조정 전 채무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조정 후 채무액, 월 상환액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 2007. 6. 23. 피고에게 한 차례 17,740원을 상환한 외에는 위 채무조정내용에 따른 상환을 하지 아니하여, 2008. 2. 14. 위 채무조정이 실효되었다.

라. 원고는 2009. 9. 10. 청주지방법원 2009하단○○○○호 및 2009하면○○○○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구상금 채무,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무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 대한 채무는 누락되었다.

마. 청주지방법원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0.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1. 4. 26.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1. 5. 6.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모두 희망 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양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는 따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하게 된 것이어서,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 또는 참가인에 대한 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고, 2007. 4.경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하여 신용회복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고의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 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원고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이고, 원고는 2005. 1. 25. 위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7. 4. 25.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결정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은 점, 신용회복신청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와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를 서로 구분한 점, 그리고 원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신용회복절차 진행 당시에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

서도 과실에 의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김수정

 판사 박정진